

의안번호	2212404
의 퇴 인	추경호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10.
추계번호	25F447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 투자분까지 1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 등은 2027년 1,78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 등, 2027년

(단위: 억원)

	2027	누적	연평균
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(안 제24조제1항제3호)	-1,783	-1,783	-1,783

주: 1) 해당 항목의 세수효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(감면액의 20%)를 고려한 값임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4조제1항제3호 (통합투자세액공제)	○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- 2025년 투자분에 대해 적용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26년 투자분까지 1년 연장 - 공제율(%): (일반) 중견 5 → 7, 중소 10 → 12 (신성장·원천기술) 중견 6 → 8, 중소 12 → 14 ※ 대기업의 시설투자, 중소 및 중견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등에 대한 투자는 현행 및 개정안의 공제율이 동일하게 적용	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24조제1항제3호 (통합투자세액공제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7년에 발생
 - 2026년 귀속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27년에 신고됨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7년에 발생한다고 가정
-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안에 대한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
 -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~2024년 기술별·기업규모별 통합투자세액공제 신고실적 및 2025년 세액공제 실적(잠정치)을 활용
 - 단, 2025년 실적의 경우, 공제액 총액정보만 활용 가능하여 기술별·기업규모별 비중은 2023~2024년의 합산실적의 비중과 동일하다고 가정
 -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인사업자(소득세) 공제의 경우, 전액 일반기술의 중소기업에 속한다고 가정
 - 향후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비투자 증감률 전망¹⁾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가정
 - 2026년 중소 및 중견기업의 일반 시설투자와 신성장·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등의 투자에 대하여 현행 및 개정안의 공제율 차이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
 -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감면액의 20%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므로, 추계 시 이를 고려함
- 향후 기업에 이익이 충분히 발생하여 확대되는 세액공제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며, 최저한세 적용 등은 고려하지 않음
- 동 추계는 세액공제율 변화에 따른 기업의 행태변화를 고려하지 않음
 - 국가전략기술에 통합투자세액공제 연장에 따라 기업의 투자 결정 등이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지만, 추계 시 이를 고려하지 않음

1) 국회예산정책처, 「2026년 NABO 경제전망: 2025~2029」, 2025.10.

3.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□ (제도 개요)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제도로 현행 2025년 투자분에 적용되고 있음

- 동 제도는 2023년 및 2024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술별·기업규모별 투자 전체에 적용되었으나, 2025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일반 시설투자와 신성장·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등 투자에만 적용중
- 개정안은 2025년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말로 연장하는 내용으로,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인상되어 법인세 및 소득세 수의 감소가 예상

[표 2] 2026년 투자분에 적용되는 현행 및 개정안의 투자세액공제율

(단위: %)

	현행(임시투자세액공제 종료)			증가분	→	개정안(임시투자세액공제 지속)			증가분
	당기분					당기분			
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	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
일반기술	1	5	10	10		1	7	12	10
신성장·원천기술	3	6	12			3	8	14	
국가전략기술	15	15	25			15	15	25	
－ 반도체 분야	20	20	30			20	20	30	

주: 1. 굵은 글씨는 현행 및 개정안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
2.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 후 받는 우대공제율은 제외한 수치임

□ (공제실적) 2024년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법인세 실적은 1조 6,424억원으로, 기업규모별·기술별 공제실적은 다음과 같음

- 한편,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소득세를 포함한 실적은 1조 7,693억원 수준

[표 3] 기술별 통합투자세액공제 실적(법인세): 2023년 및 2024년 신고 기준

(단위: 억원)

	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계
2023 신고	일반	4,422	1,477	5,581	11,480
	신성장·원천기술	29	10	3	42
	국가전략기술	0.1	0.1	8,241	8,241
	계	4,451	1,487	13,825	19,763
2024 신고	일반	4,662	2,094	8,798	15,554
	신성장·원천기술	17	1	219	236
	국가전략기술	66	50	517	633
	계	4,746	2,144	9,534	16,424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2025년 공제실적(잠정치)은 2조 4,204억원으로 2024년 대비 47.4% 증가

(2) 추계방법

□ (2025년 기술별·기업규모별 공제액 추정치) 2025년 잠정실적을 2023년 및 2024년 기술별·기업규모별 합산 공제실적의 비중을 바탕으로 기술별·기업규모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

- 2023~2024년간 법인세의 기술별 합산 공제실적 비중을 바탕으로 2025년 잠정실적을 기술별로 구분하면, 일반 시설투자의 공제규모는 1조 8,181억원, 신성장·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등 투자의 공제규모는 190억원 수준으로 추정
 - 기술별 비중(%): 일반 75.1, 신성장·원천기술 0.8, 국가전략기술 24.1
 - 단,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소득세 실적을 감안하면, 일반 시설투자의 공제규모는 1조 9,658억원 수준으로 추정
- 동일한 방법으로 일반 시설투자 및 신성장·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등 투자를 기업규모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
 - 기업규모별 비중(%): (일반) 중소기업 34.2, 중견기업 13.2, 대기업 52.6
(신성장·원천기술) 중소기업 16.0, 중견기업 3.6, 대기업 80.4

[표 4] 기술별·기업규모별 통합투자세액공제 추정치: 2025년

(단위: 억원, %)

	2023년	2024년	합산(비중)	2025년 추정치			
				계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
일반	11,480	15,554	27,034 (75.1)	19,658	7,703	2,394	9,561
신성장·원천기술	42	236	279 (0.8)	190	30	7	153
국가전략기술	8,241	633	8,874 (24.1)	5,833	1	0	5,832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(향후 세수효과 추정) 2025년 잠정실적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 설비투자 증감률 전망(2025.10.) 및 현행 및 개정안의 공제율 변동을 가정하여 2027년 세수효과를 추정

- 공제의 발생시점과 징수시점의 시차(1년)를 고려하여 t년의 공제액은 t-1년의 설비투자 증감률에 따라 변동
 - 명목 설비투자 증감률(%): 2025년 5.1, 2026년 3.3
- 현행 및 개정안의 공제율 차이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
 - 공제율(%): (일반) 중견 5 → 7, 중소 10 → 12
(신성장·원천기술) 중견 6 → 8, 중소 12 → 14
 - 세수효과 추정시 농어촌특별세 과세분(20%)을 반영하여 추정

[표 5] 2027년 기준 세수효과 추정치

(단위: 억원, %)

	현행(A)	개정안(B)	차이(A-B)
중소기업	7,279	8,733	-1,455
중견기업	1,937	2,711	-774
계(C)	9,215	11,444	-2,229
세수효과($C \times [1 - 0.2]^{1)}$)			-1,783

주: 1) 세수효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(감면액의 20%)를 고려한 값임

(3) 추계결과

-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 투자분까지 1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 등은 2027년 1,78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 등, 2027년

(단위: 억원)

	2027	누적	연평균
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(안 제24조제1항제3호)	-1,783	-1,783	-1,783

주: 1) 해당 항목의 세수효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(감면액의 20%)를 고려한 값임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